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4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4월 14일

나. 발 의 자: 우경란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4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,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, 정보 제공을 체계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본 조례안은

- 안 제2조(정의)는 “고령운전자”의 연령을 “70세”에서 “65세”로 낮춤.
 - 고령화에 따라 서울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9년 91만명(11.68%)에서 2023년 기준 123만명(15.6%)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 - 또한,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, 12월에는 양천구 목동 시장에서 74세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으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.
 - 한편,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뿐만 아니라 65~69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2022년 및 2023년 기준 사망자 수는 70세 이상보다 65~69세 고령운전자로 인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 - 한편,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중 “교통카드 지원사업”은 서울시 사업으로 70세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지만, “스마트 정보교육” 등 그 밖에 사업 및 교육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의 책무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,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.
- 안 제4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)제1항은 현행 조례에 “대중교통요금 등”을 ▲영등포사랑상품권 ▲교통카드 ▲대중교통 이용 혜택 등으로 세분화함.
 - 한편, 세분화된 지원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

한 지원 조례」 제4조(재정지원)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, 추후 서울시에서 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 사항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서울시 사업 외에도, 영등포구에서 필요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제2항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, 안 제2조에 따른 연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마다 적절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입법조치라 사료됨.

○ 안 제5조(교육)는 “스마트 정보교육”을 추가하였는데, 이는 “앱과 인터넷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”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판단됨.

○ 안 제6조(정보제공)는 「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령운전자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□ 검토결과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70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~69세 사이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인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세→65세로 하향하고,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정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경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4.

발 의 자: 우경란, 차인영, 이규선
이성수, 유승용, 전승관
정선희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,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, 정보 제공을 체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70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)”을 “(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부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따른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
2.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그 밖에”를 “스마트 정보교육을 포함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

제6조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고령운전자”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<u>70세</u>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.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<u>예방</u>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 <u>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</u> ----- -----.
제4조(<u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</u>)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<u>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</u>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<u>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</u> 할 ----- -----. 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따른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5조(교육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1. 2. (생 략) 3. <u>그 밖에</u> 교통안전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<u><신 설></u> 제6조(정보제공)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<u>위하여</u>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<u>드 지급</u> 2.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<u>그 밖의</u> 혜택 제공 3. <u>그 밖에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. 제5조(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스마트 정보교육을 포함한</u> ----- 4. <u>기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</u> 제6조(정보제공)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<u>서울특별시 실태조사 결과에</u> <u>근거하여</u> ----- -----.
--	--